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 4. 19.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4월 14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4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7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1. 4. 1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조 한 영

가. 제안이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임대주택 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2세대 이상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현행 "60제곱미터(18평)이하"에서 "85제곱미터(25.7평)이하"로 확대 적용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월세금의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2세대이상을 임대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확대 적용하여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1. 2. 7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시달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써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임대개념이 다른 것은?

○ 답변요지(조한영 세무2과장) : 여기서 임대주택은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근본 취지는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혜택을 주는 것임.

○ 질의요지(박주서 위원) : 임대업자로 등록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 답변요지(조한영 세무2과장) : 공동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1. 4. 13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임대주택 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2세대 이상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현행 “60제곱미터(18평)이하”에서 “85제곱미터(25.7평)이하”로 확대 적용함.

(안 제9조제3호)

3. 제정근거

(1)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 제7조 내지 제9조

(2) 지방세법시행규칙(2000.12.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 제2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5. 예산조치 필요성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01.3.20 ~ 4. 9)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함.(서울시 세정 13415-150, 2001.2.7) 공문 통보

다. 2001. 4. 13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 원안의결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호중 “60제곱미터이하”를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